

「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년 10월 2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4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4년 10월 14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안전교통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대중교통 이용이 취약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희망택시 사업 지원 대상자의 택시 이용 부담요금을 평창군 농어촌버스와 동등하게 조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주민의 희망택시 이용 부담요금 인하(별표 1)
- (현행) 1,400원 → (개정) 1,000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
2.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[붙임 1]

「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평창군수
- 제안일자 : 2024. 10. 2.
- 회부일자 : 2024. 10. 14.
- 상정일자 : 2024. 10. 14.

2. 제안이유

- 대중교통 이용이 취약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희망택시 사업 지원 대상자의 택시 이용 부담요금을 평창군 농어촌버스와 동등하게 조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주민의 희망택시 이용 부담요금 인하(별표 1)
 - (현행) 1,400원 → (개정) 1,000원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, 제28조에서는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대중교통 이용이 취약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희망택시 지원 대상자의 택시 이용 요금을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별표 1(희망택시 이용자 부담요금)의 이용자 부담요금을 (현행) ‘1,400원’ 에서 (개정) ‘1,000원’ 으로 인하하여 농어촌버스 요금과 동등하게 조정하고자 함.

※ **현행** 1,400원 → **개선** 1,000원

5. 종합검토의견

- 희망택시 지원 대상자의 택시 이용 요금을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합당하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**지방자치법**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[붙임 2]

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4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10. 2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대중교통 이용이 취약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중인 희망 택시사업 지원 대상자의 택시이용 부담요금을 평창군 농어촌버스 요금으로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6조제2항 별표 1의 이용자 부담요금 : 1,400원 ⇒ 1,000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2025년 희망택시 사업예산에 반영계획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4. 8. 27. ~ 2024. 9. 1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평창군 공고 제2024-1225호, 안전교통과-21190(2024. 8. 26.)호

- 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3123(2024. 8. 21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예산과-3123(2024. 8. 21.)호]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6899(2024. 8. 22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4599(2024. 9. 20.)호]
- 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 [기획예산과-4934(2024. 9. 26.)호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4조의 이용자(탑승자) 부담요금란 중 “1,400원”을 “1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희망택시 이용자 부담요금(제6조제2항 관련)

대상	이용자(탑승자) 부담요금
제4조 대상자	◦ 1,000원(4인까지 이용 가능)

관계법령 발취

[지방자치법]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희망택시 이용자 부담요금 인하에 따른 지원금 증가
- 소요금액 : 500명 × 8회 × 700원 × 12월 = 33,600천원/년

2. 미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장 이시균
연락처	(033) 330 - 2019